

#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문(안)

## □ 지원 대상

-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\* 직·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

\* 예: 의료, 여행, 공연, 유통, 숙박, 음식업 등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
## □ 지원 내용

- 기한연장 : 취득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(재산분, 종업원분) 등 신고 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·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,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한 등을 6개월 (최대 1년) 범위 내에서 연장 (「지방세기본법」§26)
- 징수유예, 고지유예, 분할고지, 체납처분 유예 : 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(균등분)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유예(「지방세징수법」§25, §105)
- 세무조사 유예 :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「세무조사 기간연장(중지) 신청서」 제출(「지방세기본법」§83)

## □ 신청 방법

- 부산진구청 세무1,2과 방문 및 우편 제출, 전화 문의

## ❖ 문의처(부산진구)

1. 세무1과(재산세, 취득세, 주민세) - 문성훈 ☎051-605-4502
2. 세무2과(지방소득세, 자동차세, 세무조사) - 최보영 ☎051-605-4182